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
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

2021. 9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····· 2

Ⅲ. 개선방안 주요내용 ····· 4

1.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····· 5

[1]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····· 5

[2] 자기신체사고(자손) 담보 보상한도 증액 ····· 6

[3]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····· 8

2. 상급병실,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····· 9

[1]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····· 9

[2]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····· 10

[3]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····· 11

[4] 마약·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····· 11

3. 일상 생활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····· 12

[1]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····· 12

[2]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····· 13

[3]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····· 13

[4] 상실수익액 할인 방식 개선 ····· 14

4.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····· 14

[1]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·공표 ····· 14

[2]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····· 15

Ⅳ. 향후 추진일정(안) ····· 16

Ⅰ. 추진 배경

□ 자동차보험은 **'63년 가입 의무화** 이후 **가입자가 2,300만명**을 넘어서며 **국민의 일상**에 **필수적인 보험**으로 자리 매김

* 가입자 수(만명): (00년) 1,184 → (10년) 1,725 → (20년) 2,364

□ 그간 **보장기능 확대**와 **보험료 경감**을 위한 **제도개선***을 지속 추진해온 가운데, **자동차 사고 양상**도 **크게 변화**

*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, 고가차량 할증 강화, 경미손상 수리기준 마련 등

○ 차량 증가로 **"車-보행자 사고"는 줄고, "車-車 사고"가 늘면서** (비중 약 91%) 중상환자 대비 **경상환자**(상해 12~14등급) **비중**이 **확대**

- 최근 **보험금 지급**이 **급증**[1]하면서 **경상환자의 과잉진료**가 **주요 원인으로** 지목된 바, 제도 초기부터 **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**하고 있는 **무과실주의**[2]**의 개선 필요성**도 제기

* 1) 보험금 지출(조원): ('14년) 11.0 → ('16년) 11.8 → ('20년) 14.4(6년간 약 31% / 연간 약 5% 증가)
2)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상·경상 구분 없이 무과실주의 적용

※ **영국**은 과잉진료, 과실비율 분쟁 등에 따른 **사회적 비용을 연간 1.7조원**으로 판단하고, 최근 이와 관련된 **제도개선 추진**(평균 보험료 5만원 절감 예상)

□ 한편, 오랜 기간 자동차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**생활 속의 불합리한 보장 사각지대**도 하나씩 부각

○ 특히, **부녀자, 군인** 등에 대한 **적정 보험료 책정, 정당한 보상금 지급** 등을 통해 **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확대** 요구

➡ 국민의 **보험료 부담 경감**과 **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**을 위해 **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** 추진

○ **보험금 누수를 방지**하여 **보장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**에 **더 많은 혜택**이 돌아갈 수 있도록 **자동차보험 구조 개편**

Ⅱ.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

◈ **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정체**[1](포화시장)된 상황에서 **보험금 지급 증가는 그대로 기존 가입자에 전가**[2]되는 측면

* 1) 가입자수 증가율(평균, %): ('91~'95) 29.4 → ('01~'05) 4.1 →('16~'20) 2.5
2) 평균보험료: ('14년) 64만원 → ('20년) 75만원 (6년간 약 20% 증가)

○ 자동차보험은 **운전자인 국민은 가입이 강제**된 **의무보험**으로 **보험료(수입)와 보험금(지출)의 균형**이 중요

* 합산 손해율(%): ('16) 102 → ('17) 100 → ('18) 105 → ('19) 111 → ('20) 102

➡ **보험금 누수 가능성**이 있는 경우 **적기에 개선** 필요

1 **(개 괄)** '20년 **지급 보험금은 총 14.4조원** (人보상 6.3조원, 物보상 7.8조원)으로 최근 **人보상**을 중심으로 **가파르게 증가**

< 전체 보험금 및 인보상 현황('16~'20년, 억원, %) >

구 분	'16년 (a)	'17년	'18년	'19년	'20년 (b)	증가액 (c=b-a)	증가율 (c/a)
전체 보험금	117,995	122,311	130,579	142,472	144,422	**26,427**	**22.4**
인보상	48,159 (40.8)	50,687 (41.4)	51,366 (39.3)	60,055 (42.2)	62,688 (43.4)	**14,529**	**30.2**
물보상	66,043 (55.9)	67,683 (55.3)	75,013 (57.4)	78,461 (55.1)	77,643 (53.7)	**11,600**	**17.5**

2 **(상해 정도)** 중상환자(1~11등급)의 경우 큰 변화가 없으나, 경상환자(12~14등급)에 대한 **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**

○ '20년 **경상환자 보험금**은 **2.9조원**으로 5년간 **50% 증가**하였으며,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**7.8%p 증가** ('16: 58.3% ➔ '20: 66.1%)

< 상해정도에 따른 보험금* 지급('16~'20년, 억원, %) >

구 분	'16년 (a)	'17년	'18년	'19년	'20년 (b)	증가액 (c=b-a)	증가율 (c/a)
경상환자	19,302	20,332	24,651	27,864	29,092	**9,790**	**50.7**
평균(만원)	126	135	148	163	183	**57**	**45.2**
중상환자	13,808	13,570	13,908	13,995	14,942	1,134	8.2
평균(만원)	1,390	1,435	1,434	1,388	1,424	34	2.4
합 계	33,110	33,902	38,559	41,859	44,034	10,924	33.0

* 전체 인보상 중 대인1 및 대인2 합계(자손·자상·무보험 제외)

3 **[진료 유형]** 경상환자의 경우 **양방치료비는 약 20% 감소**한 반면, **한방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% 이상 증가***

* 경상환자 치료비(향후치료비 제외) 중 **한방치료비 비중**은 **73.3%** ('16: 45.9%)

< 진료유형에 따른 경상환자 치료비 현황('16~'20년, 억원, %) >

구 분	'16년 (a)	'17년	'18년	'19년	'20년 (b)	증가액 (c=b-a)	증가율 (c/a)
양방치료비	3,656	2,756	3,613	3,509	2,947	**△709**	**△19.4**
한방치료비	3,101	2,922	4,938	6,563	8,082	**4,981**	**160.6**
향후치료비*	8,467	9,249	11,339	12,991	13,171	**4,704**	**55.6**
합 계	15,224	14,927	19,890	23,063	24,200	8,976	59.0

* 향후치료비: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지급하는 치료비(합의금 포함)로 반적으로 양방·한방 치료비 증가시 함께 증가

4 **[평 가]** **경상환자 및 한방치료비**의 가파른 상승세가 **전체 보험금 지출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**중인 것으로 평가

< 경상환자 보험금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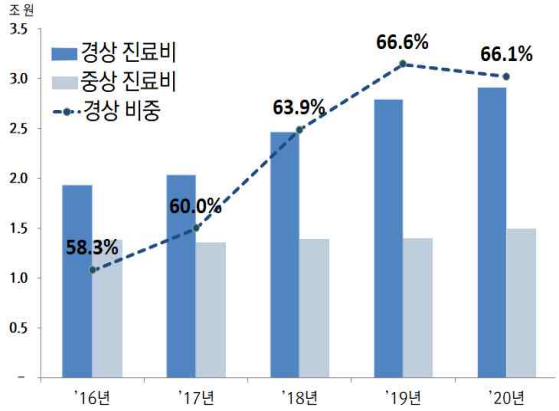

<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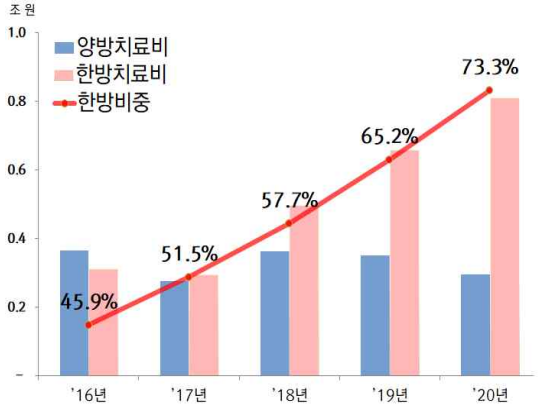

※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·통원일수 비교

- **건강보험**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**환자 본인부담 진료비**가 있어 **과잉진료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음**
- **동일한 수준·유형의 상해**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**진료비, 통원일수**가 각각 **최대 5배, 2.8배** 차이 발생

상해	환자당 진료비(만원)			환자당 통원일수(일)		
	자동차 보험(a)	건강 보험(b)	비율 (a/b)	자동차 보험(a)	건강 보험(b)	비율 (a/b)
경추상해	42.5	8.5	**5.0**	7.3	2.6	**2.8**
요추상해	41.8	9.5	**4.4**	7.1	2.9	**2.4**

Ⅲ. 개선방안 주요내용

< 기 본 방 향 >

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,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는
"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구조 개편"

추진방향	추 진 과 제
1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	❶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❷ 자기신체사고(자손) 보상한도 증액 ❸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
2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	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❸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❹ 마약·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
3 일상 생활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	❶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❷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❸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❹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
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	❶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·공표 ❷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

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

[1] 경상환자 치료비(대인2) 과실책임주의 도입(표준약관 개정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사고발생시 **과실 정도와 무관**(100:0 사고 제외)하게 **상대방 보험사**에서 **치료비**를 **전액 지급** ※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

※ (사례) 차선변경 사고에서 **차선변경 차량**(A, 과실 80%)은 13일 입원, 23회 통원 등 **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**받았으나 **직진차량**(B, 과실 20%)은 치료를 받지 않음 ➔ 高과실자의 치료비가 **低과실자에게 전가**되는 불합리 발생

- 반면, **대물**의 경우 **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**: 위 사례 기준, **低과실 B**는 A에게 **과실부분 40만원**(200만원 x 20%)만 보상 ➔ 160만원(200만원 x 80%)은 A의 자차로 처리

○ 치료비 전액지급에 따른 **과잉진료 발생** 문제는 최근 **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**으로 지적 ※ 대인1 지급 ➔ 부족분 대인2 지급

<자동차 사고시 대인1 및 대인2 치료비 보상체계>

	대인1(의무)	대인2(선택)
근거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	자동차보험 표준약관
한도	1등급: 3,000만원 ~ 14등급: 50만원	5천만원 ~ 무제한 中 선택 (사실상 제한 없음)

- **과실책임주의**가 기본인 **손해배상 법리**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*

* **대법원**도 **대인2 치료비**에 표준약관과 달리 **과실상계** 적용(대법원 2001다 80778 등)

<상기사례>

	A(과실 80%)		B(과실 20%)
치료비	200만원	(14등급) 50만원	0원
보험	대인 1(의무)	150만원	대인 1(의무)
	대인 2(선택)		대인 2(선택)

※ **과실상계 적용**시 B는 A에게 **대인1 50만원** 보상(대인1 한도(50만)>과실부분(200만x0.2))

□ **(개선방안)** **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**하여 **경상환자**(12~14등급)의 **치료비**(대인2) 중 **본인과실 부분**은 **본인부담**(보험사)으로 처리

※ 대인1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상해 등급별 한도(3천만원~50만원) 內 전액 지급
(사유: (i)자배법상 과실책임주의 예외 근거 有, (ii)최소 치료금액 보장 목적)

○ **(적용대상)** 환자의 **원활한 치료권 보장**을 위해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**중상환자(1~11등급)를 제외**한 **경상환자**에 한해 도입

-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**보행자**(이륜차, 자전거 포함)는 **적용 제외**

○ **(적용방식)** 신속한 치료를 위해 기존과 같이 **우선 치료비를 전액 지급**(상대방 보험사)하고 **사후적으로 본인과실 부분 환수**

- **본인과실**에 따른 치료비는 **본인보험***(자손 또는 자상)으로 처리 가능

* [자손(자기신체사고)] 보상: 등급별 한도 / 보험료: 낮음(1~2만원) / 가입률: 약 43%
[자상(자동차상해특약)] 보상: 전액 지급 / 보험료: 높음(4~5만원) / 가입률: 약 53%

▶ **자동차상해**(자상) 특약 가입시에는 **환자 자비부담 없음**(5천만원 보장)

▶ 제도 변경시 **자손** 기준 **환자 자비부담이 발생**하는 경우는 **일부 국한**
(과실 50:50 기준, 12등급 360만원, 13등급 240만원, 14등급 160만원 까지 자비부담 없음)

○ **(적용시기)** 전체 **계약자 약관**에 **일괄반영**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**충분한 유예기간** 부여 ➔ **'23.1.1일부터 시행**(사고 기준)

* '21년중 표준약관 개정 ➔ '22년부터 개별 약관에 반영 ➔ '23년부터 시행

[2] 자기신체사고(자손) 보장 보상한도 증액(개별약관 개정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**본인과실 부분**은 **자손 또는 자상 보험으로 보상**받아야 하나 **자손의 보상 한도**가 낮은 측면

□ **(개선방안)** 본인부담 치료비를 **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**받을 수 있도록 **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를 상향**

< 자기신체사고 담보(자손) 보상한도 상향(안)>

등급별 보상한도 (3천만원 기준)	12등급	13등급	14등급
현행	120만원	80만원	40만원
개선	**180만원**	**130만원**	**80만원**

<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 > ※ 이번 개편은 **경상환자에 국한**

◈ 年 **5,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 예상** ☞ 全**국민 보험료 2~3만원 절감**

◈ **과실상계 + 자손 확대** ☞ **低과실자 보장 확대**(高**과실자 부담 소폭 증가**)

참 고 **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치료비 예시(상세 별첨)**

※ (가정) **상해 14등급**, **본인 치료비 120만원**, **기타 80만원**(위자료, 휴업손해, 향후치료비 등), **총 손해액 200만원**

□ **(사례1, 高과실자 보장↓) 본인 과실 70%, 상대방 과실 30%**

항목	현행		제도개선 후		
	(상) 대인	①(본) 자손	(상) 대인	③(본) 자손	④(본) 자상
치료비	120만원 (전액지급)	-	60만원 (대인1 - 50만 대인2 - 10만)	60만원	140만원
치료비 外	-	40만원	-	20만원	
총 계	**120만원**	**40만원**	**60만원**	**80만원**	**140만원**

○ (현행) 표준약관에 따라 **상대방 보험사**가 **치료비 120만원 전액 지급**

- **본인 보험사**에서 **자손 14등급**에 해당하는 **40만원 지급, 나머지 4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**으로 처리(자상 가입시에는 본인부담 없음)

○ (개선) **상대방 보험사**는 **과실부분 60만원**(200x0.3)**에 한해** 치료비 지급

- **자손 가입시**, 본인 보험사에서 **증액된 자손 14등급**에 해당하는 **80만원 지급, 나머지 6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**으로 처리

- **자상 가입시**, 본인 보험사에서 140만원 지급, **환자 본인부담 없음**

□ **(사례2, 低과실자 보장↑) 본인 과실 30%, 상대방 과실 70%**

항목	현행		제도개선 후		
	(상) 대인	①(본) 자손	(상) 대인	③(본) 자손	④(본) 자상
치료비	120만원	-	99만원 (대인1 - 50만 대인2 - 49만)	21만원	60만원
치료비 外	20만원	40만원	41만원	39만원	
총 계	**140만원***	**40만원**	**140만원**	**60만원**	**60만원**

* 전체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과실비율 적용중(200x0.7=140)

○ (현행) 전체 손해액 200만원 중 **상대방 총 부담**은 **140만원**(200x0.7), **치료비는 120만원** 전액, **치료비 外 나머지 20만원**(140-120) 지급

- 본인 보험사에서 **자손 14등급**에 해당하는 **40만원 지급, 나머지 2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**으로 처리(자상 가입시에는 본인부담 없음)

○ (개선) **상대방 총 부담**은 **140만원**(200x0.7), 치료비 **대인1 50만원, 대인2 49만원**(70x0.7)으로 **총 99만원, 치료비 外 나머지 41만원**(140-99) 지급

- 증액된 자손 가입시 60만원 지급, **환자 본인부담 없음**

[3]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(표준약관 · 국토부 고시 개정)

□ **[현황 및 문제점]** 사고발생시 **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**도 **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**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

○ 이로 인해 **필요 이상**으로 **장기간 병원치료**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**과도한 합의금을 요구**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*

* (예) **후미충돌**(수리비: 범퍼 30만원)시 단순염좌에도 **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(500만원)**

※ '산재보험 · 건강보험'과 '자동차보험'의 차이

▶ (산재보험) 「산재보험법」은 부상근로자가 **요양기간을 연장**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**진단서**(진료계획)**를 제출**하도록 의무화 ➔ **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** 가능

▶ (건강보험)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은 **진료비 중 일정 부분**에 대해 **환자 본인이 부담**하는 **자기부담제도** 운영중 ➔ **환자의 과잉진료 유인** 억제

□ **[개선방안]** 장기간 진료 필요시 **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**을 위해 **의료기관 진단서**를 기준으로 **보험금을 지급**하도록 개선

○ **(적용대상)** 중상환자(상해 1~11등급)를 제외한 **경상환자**에 한해 적용

○ **(적용방식) 충분한 치료권 보장**을 위해 **4주***까지는 **기본 보장**, **4주 초과시**에는 **진단서上 진료기간**에 따라 **보험금 지급**

* (누적 진료기간) 경상환자의 **63%가 14일, 81%가 28일** 이내 진료 종결('19년)
(평균 진료기간) '15년 15.4일 → '19년 21.1일(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)

- 환자가 진단서 제출의무를 **인지하지 못하여 피해**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가 **환자**에게 SMS 등으로 **설명·안내하는 절차**도 마련

※ 해외 주요국의 "진단서 제출 의무화" 사례

▶ (캐나다)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**보험금 상한을 CAD $ 3,500(약 320만원)으로 제한**하고, 보험금 청구시 **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**

▶ (영국) '18년 「민사책임법」 개정을 통해 **모든 whiplash(목·등·어깨) 부상**에 대해 의료기관 **진단서 발급을 의무화**하고, **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** 제한

▶ (일본) 보험금 청구시 **진단서** 등 의료비 지급 증명서를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출

○ **(적용시기)** 소비자, 의료기관, 보험사 등에 **충분한 안내가 필요**한 만큼 **일정 유예기간** 부여 ➔ **'23.1.1일부터 시행**

2 상급병실,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

[1]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(국토부 고시 · 표준약관 개정)

□ **[현황 및 문제점] 자동차보험**은 건강보험(병실 등급에 따라 30~100% 환자부담)과 달리 병실 등급*과 관계없이 **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**

* (병실 등급) 상급병실: 1인(병원급 이상)~3인(의원급) 입원실, 일반병실: 4인~6인 입원실

※ '건강보험'과 '자동차보험'의 입원료 지급방식 비교

▶ (**건강보험**)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**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추가 비용**만큼 환자가 부담(병원급 이상)하거나 **입원료 전액**(의원·한의원)을 환자가 부담

* (예시) 병원급 2인실 입원 시, 입원료(74,730원) 중 40%(29,900원)는 환자 본인 부담

▶ (**자동차보험**) 부득이한 경우(상급병실만 있는 경우, 독립공간 필요 의료진 판단 시)에만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하나, **일부 의료기관은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전액 지급**

○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**상급병실 입원료**(의원급) **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**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

<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(의원급)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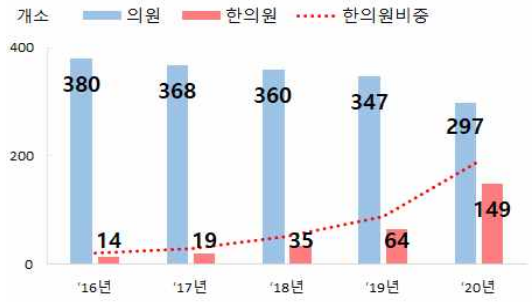

< 상급병실 입원료(의원급) 지급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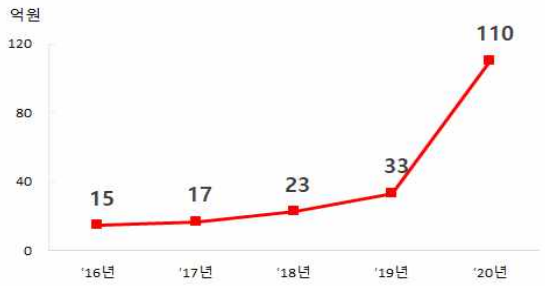

□ **[개선방안]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**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·검토하여 **진료수가 기준 개정** 추진

< 상급병실 입원료 진료수가 개선방안 예시>

① (**상급병실 입원료 진료수가 상한제**) 상급병실 **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**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한금액까지만 지급

② (**상급병실 입원료 자기부담금제**) 건강보험(자기부담금제 운영 중)과 같이 상급병실 입원 시 **입원료 중 일정 부분을 환자본인이 부담**

③ (**상급병실 입원료 '전액지급 대상' 축소**) 환자의 신체적·심리적 안정, 집중치료 필요 등 **'치료목적'을 위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로 한정**

○ **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**이 이뤄질 수 있도록 **'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**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**'22년 내 시행**

[2]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(국토부 고시 개정)

□ **[현황 및 문제점]**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중 **한방분야 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**(5년간 연평균 **한방 25%↑**, 양방 0.3%↑)

○ 특히,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**첩약·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**하여 **과잉진료 유인이 존재**한다는 지적

* 국회 입법조사처, 「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」('20.7월)

< 최근 5년간 진료비 변화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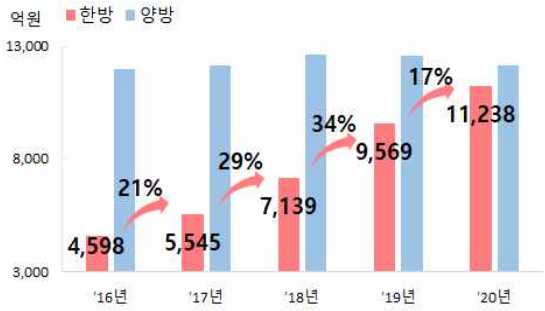

< 한방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비율('20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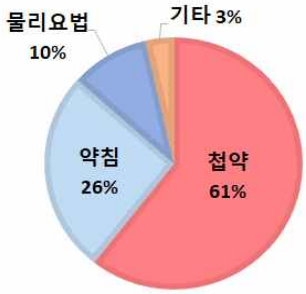

□ **[개선방안]** 전문기관 **연구용역**을 통해 첩약·약침 등 **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**하고 **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**

※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(안)

▶ (**기 간**) '21.10월 ~ '22.4월(6개월)

▶ (**수행기관**) 한의학계·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수행하는 방안 협의 중

▶ (**주요내용**)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

○ 첩약의 경우 **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**하여 **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를 고려**한 합리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**기준 수립***

* 연구용역 완료('22.上) → 기준 개정안 마련, 관계기관 협의('22.下) → 기준 개정·시행('23년)

※ 한방 첩약 처방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시범사업

① (**목 적**)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**첩약 처방 관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**,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

② (**대상질환**) 안면 신경마비, 뇌혈관질환후유증, 월경통

③ (**내 용**)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**검사, 진단, 처방, 조제,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**하여 수가 신설

[3]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**를 거쳐 **진료수가의 적정 여부를 결정·통보**

○ 현재까지 **총 8개 항목**에 대한 **심사지침을 마련·적용**하고 있으며, 심사지침 적용 이후 **청구건수 및 이의제기율 감소**

* (**의 과**) 도수치료, 이온삼투요법, **체온열**, 증식치료, 견인치료
(**한의과**) **체온열**, 직접애주구(소애주), 첩약 병용, 의과·한의과 유사진료 범주 결정

※ 체온열 검사 '심사지침('20.12월부터 적용)' 주요내용 및 도입효과

▶ (**주요내용**) 체온열 검사* 시행시기, 검사환경,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 표준화

* (세부내용) 피부표면 온도를 측정하여 병소(세포집합)의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

▶ (세부내용)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최초 사고발생일로부터 2~3주 경과 후 시행 시 1회 인정하며, 태양광 등이 차단된 실내 온·습도가 일정한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탈의한 상태로 실내환경온도에 적응시키고 실시하여야 함

▶ (**효 과**) 지침 적용 이후 청구건수 59.2% 감소 및 이의 제기율 6.1%p 감소

○ 다만, 신기술·첨단장비 보급 등으로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**항목이 다수 발생**하여 이해관계자 간 **분쟁 지속***

* (예) 자동차보험 도수치료는 산재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, 세부사항 미비로 인해 기준적용에 대한 혼란과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민원 발생

□ **(개선방안)** 심사기준이 모호하거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'심사지침'을 마련·적용하고, 심사지침 항목 및 범위를 지속 확대

[4] 마약 · 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(자배법령 · 표준약관 개정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음주운전의 경우 **사고부담금이 도입***되었으나, **마약·약물 운전사고**에 대해서는 **사고부담금이 부재**

* (자배법上 의무보험) 대인 1천만원, 대물 5백만원('22.7월부터 전액 구상 예정)
(표준약관上 임의보험) 대인 1억원, 대물 5천만원

□ **(개선방안)** 음주운전과의 **형평성, 마약·약물 운전**에 대한 **경각심 부여** 등을 위해 마약·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신설*

* (자배법上 의무보험) 대인·대물 전액 (표준약관上 임의보험) 대인 1억원, 대물 5천만원

3 일상 생활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

[1]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(참조요율서 개정)

□ **[현황 및 문제점]**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**보험 분리·가입시*** **보험료 부담이 급증**

* 이혼, 배우자 사망, 장거리 직장 발령,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

○ **배우자**(종피보험자*)가 **별도 자동차 보험** 가입시 **무사고경력**을 **인정하지 않는데 기인**(단, 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)

* 부부한정특약, 가족운전특약, 지정운전자특약 등으로 등록된 피보험자

○ 통계적으로 특약 가입 배우자간 **사고비율이 5:5***임에도 별도 보험가입시 **기본 위험등급을 적용**하는 것은 **불합리한 측면**

* ('19년 사고건수) 주피보험자 약 55만6천건, 종피보험자 약 52만2천건

□ **[개선방안]** 특약의 **종피보험자로 등록된**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**동일하게 인정**(최대 3년)

○ **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**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**약 20~30%의 보험료 인하** 효과

*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 기존 대비 **약 40% 인하 효과**

< 40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(예: 중형 승용차) >

구분	무사고 미적용	무사고 1년 적용	무사고 2년 적용	무사고 3년 적용
가입경력 적용(3년)	102만원	87만원	80만원	**76만원***

* **기본 보험료 약 126만원**(가입경력 미적용 + 무사고경력 미적용시)

※ **무사고 인정기간**을 **최대 3년**으로 **제한**한 사유

❶ 사고 발생시 **할증등급은 미적용**(민원방지)하므로 **통계적 균형 고려**

❷ 이미 **주피보험자에 적용한 무사고 할인등급**을 다른 대상자에게 **과도하게 확대** 적용시 **전반적인 보험료 인상** 가능성

[2]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(표준약관 개정, 권익위 권고사항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자동차보험은 **군복무(예정)자가 차사고로 사망**시 **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**(약 월40만원)를 **상실소득액**으로 인정

○ 반면, 차사고로 **군면제자**가 사망시 **근로자 일용임금**(약 월270만원)을 기준으로 **상실수익액을 산정**하여 **형평성 문제** 제기

□ **(개선방안)** 군복무(예정)자 **사망시** 병사급여가 아닌 **일용근로자 급여**를 기준으로 **상실수익액을 계산**하도록 개선

○ 이를 통해 車사고로 군복무(예정)자 사망시 **군복무 기간** 중의 **상실수익액이 약 4천만원 증가**(800만원 → 4,800만원)할 것으로 예상

※ 상실수익액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효과는 0.01% 수준으로 미미

[3]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(자배법 개정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고속도로 등에서 **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**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 **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**

○ **판스프링·골재 등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**의 경우 보상의 필요성은 무보험·뺑소니 사고와 동일함에도 **피해자 보호에 공백 발생**

* 무보험·뺑소니 사고의 경우 **정부보장사업**(자배법 제30조제1항)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

□ **(개선방안)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'차량 낙하물 사고'를 추가**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**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**

* (현행) 무보험, 뺑소니 사고 → (개정) 무보험, 뺑소니 + 차량 낙하물 사고

○ 자배법 개정('21.7월)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**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**을 거쳐 **'22년부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**

※ (**참고**)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年 약 800명(추정치)의 사망·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[4]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(표준약관 개정, 권익위 권고사항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통상 **장래 기간**에 대한 상실수익액 계산시 **단리** 또는 **복리방식**으로 **할인**을 적용(단리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)

○ **법원·국가배상법**은 **단리방식**(호프만식)으로 **상실수익액**을 **계산**하나, **자동차보험**은 **복리방식**(라이프니츠식)을 적용

○ 이로 인해 **자동차보험**은 **법원·국가배상법**과 달리 **과도한 중간이자 공제**방식을 적용하여 **배상액**을 **상대적**으로 **적게*** **산정**

* 미래 현금흐름 현가(할인)시에는 단리방식 금액이 복리방식에 비해 크게 산출

□ **(개선방안) 법원·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**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**할인방식을 단리방식**(호프만)으로 변경

○ **사망·후유장애**에 따른 **지급보험금**이 **대폭 확대**될 것으로 예상

* (예시)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 : 복리방식(2.6억원) → 단리방식(4.2억원)

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

[1]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산출 · 공표(보험개발원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소비자는 **보험료가 인상**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**정확한 원인**을 알 수 없어 **보험료 체계**에 대한 **신뢰 저하**

□ **(개선방안)** 자동차보험금에 **크게 영향**을 미치는 **원가요소***를 **선별**하여 **객관적 통계**에 기초한 **원가지수를 산출·공표**(보험개발원)

*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, 부품비, 정비공임,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➔ '20년 보험금 14조원 중 55%인 약 8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

○ 객관적인 **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**를 통해 **일반 소비자**의 **자동차보험료 변동**에 대한 **수용성 제고**

< '21년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및 변동률(예시) >

대인 보험금		대물 보험금	
진료수가	102.6 (2.6%↑)	부품가격	104.8 (4.8%↑)
현실소득액	106.0 (6.0%↑)	정비공임	103.7 (3.7%↑)
-	-	도장재료비	102.8 (2.8%↑)

[2]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(개별약관 개정)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**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**주행거리가 짧을수록**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**보험료 환급 특약**을 운영중

*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·만기시에 주행거리 정보(예: 주행거리 km, 차량의 계기판 사진)를 제출해야 보험료 환급(최대 60%) 가능

○ 다만, 운전자별 **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**하지 않아 운전자가 **보험사 변경시** 해당 정보를 **기존보험사**(만기 정산용) **및 신규보험사**(신규 가입용)에 **각각 제공**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

< 개인용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 및 보험료 환급률('18년 기준) >

가입자			보험료		
보험가입 (a)	**특약 가입**(b)	**가입률** (c=b÷a)	**선납보험료** (d)	**환급보험료** (e)	**환급률** (f=e÷d)
1,893만명	912만명	48.2%	54,695억원 (1인당 60만원)	9,406억원 (1인당 10만원)	17.2%

□ **(개선방안)** 운전자별 **주행거리 정보**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**보험사 변경시** 이를 **해당 보험사에 공유**

○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**변경전 보험사에만 제출**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**변경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**

<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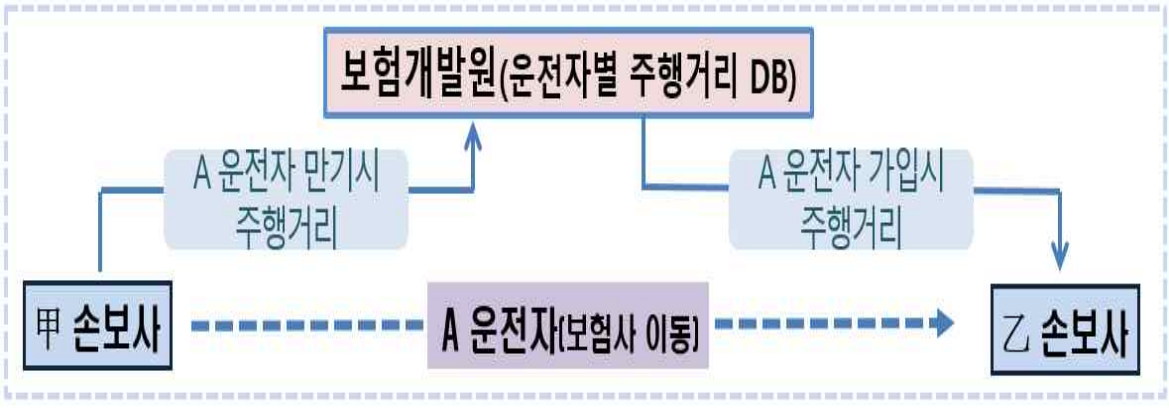

Ⅳ. 향후 추진일정

□ 금년 하반기부터 **표준약관, 관련 규정** 등 **개정**을 추진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**즉시시행** 또는 **유예기간 부여**

○ **(즉시시행)** 무사고 경력 배우자 공유,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**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**는 **규정개정 후 즉시시행**(별도 안내)

○ **(유예기간)** 치료비 과실책임주의,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등 **충분한 준비기간**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규정개정 후 **유예기간 부여**

구분	과제명	필요조치	시행시기
1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	❶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	표준약관 개정 (금융위·원)	'23.1월
	❷ 자기신체사고(자손) 보장 보상한도 증액	개별약관 개정 (금융위·원)	'23.1월
	❸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	표준약관 및 고시 개정 (금융위·원, 국토부)	'23.1월
2 상급병실,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	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	표준약관 및 고시 개정 (국토부, 금융위·원)	'22년중
	❷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	고시 개정 (국토부)	'22.上
	❸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	지침 확대 (심평원)	'22.上
	❹ 마약·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강화	자배법령·표준약관 개정 (국토부, 금융위·원)	'22.1월
3 일상 생활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	❶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	참조요율서 개정 (금융위·원, 보험개발원)	'22.1월
	❷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	표준약관 개정 (금융위·원)	'22.1월
	❸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	자배법령 개정 (국토부)	'22.上
	❹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	표준약관 개정 (금융위·원)	'22.1월
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	❶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·공표	원가지수 개발 (보험개발원)	'22.上
	❷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	개별약관 개정 (금융위·원)	'22.上